

2020년도 제7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5. 13.(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재화,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6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822건(안건번호 제2020-22228호~2375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22228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저작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22229호는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22230호~22265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과 제품키, 크랙파일 등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19-22266호~22334호는 밴드명만으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밴드에서 영화를 제공한 사안임. 해당 밴드는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거나 회원 가입만 하면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70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17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1,526개의 URL 정보에 관해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전번호 제2020-26267호~27792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17개, 총 1,526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7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6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6쪽의 저작물명, 7쪽의 저작물명, 기업명, 게시판명, 8쪽의 저작물명, 일자, 프로그램 정보, 민원내용, 9쪽의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게시물 내용, 10쪽의 게시물 내용, 게시물 제목, 13쪽의 카페 관련 내용, 저작물명, 기관명, 14쪽의 기관명, 15쪽의 실연자명, 저작물명, 채널명, 블로그명, 16쪽의 게시물 제목, 게시글 관련 내용, 19쪽의 저작물명, 일자가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2쪽~35쪽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해당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관련 부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 B 위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함. 해당 부분이 공개될 경우 게시물

이 특정될 수 있음.

- C 위원: 같은 의견임. 제2호 안건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같은 의견임. 다만 전차 회의록 14쪽에 제 발언 중 저작권법 조문을 인용한 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도록 하겠음.
- 성원영 전문위원: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수정하도록 하겠음. 한편 지난 심의에서 요청하신 사항을 '▲▲▲▲▲▲▲▲▲▲'에 문의해 보았음. 음원 사용료 징수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이 취미로 영상을 촬영하여 음원 중 일부를 이용해서 제작한 동영상 SNS나 포털에 게시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였는데, 해당 기관의 담당자는 "SNS나 포털은 우리 기관과 음원 사용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개인이 음원을 사용해서 제작한 동영상은 게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기업명, 게시판명, 일자, 프로그램 정보, 민원 내용, 게시물 제목, 게시물 내용, 카페 관련 내용, 기관명, 실연자명, 채널명, 블로그명, 게시글 관련 내용은 비식별 처리함.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2쪽~35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C, D, B, A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22228호~23750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3,822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2228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하여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22228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 ★★★★★ ★★ ★★'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음. 해당 영화는 합법시장에서 판매 중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2222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 있음.

- B 위원: 해당 사안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보임.
- D 위원: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222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222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영상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올림.
(안전번호 제2020-22229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제목은 ‘네코파라 7화 (2020)’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클릭하면서)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국내에 서버가 있는 ‘○○○○○○○○○○○○○○○○○○○○’에 게시된 ‘네코파라 7화’ 애니메이션으로 연결됨.
(해당 영상물을 재생하면서)해당 영상물에는 자체 자막으로 보이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방송물은 최근 웹하드에서도 불법복제물로 많이 보이고 있음.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보여주면서)참고로 해당 방송물은 2020. 1. 9. 부터 2020. 3. 6.까지 일본 AT-X 채널에서 12부작으로 방영되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등을 게시한 행위 자체가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링크 설정 게시물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음.
대법원은 링크 글을 게시한 자의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 방조책임을

부정한 바 있음. 그러나 그 후 서울고등법원은 링크행위에 대한 민사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음.

따라서 링크설정행위가 민사적인 의미에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되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링크설정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될 수 있음.

- C 위원: 링크로 연결되어 일본 애니메이션이 스트리밍되는 사이트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인지?
- B 위원: 해당 사이트는 개인 스트리밍 서버로 보임.
- C 위원: 포털에서 영상물을 보기 위해 저작물명을 검색했을 때 해당 사이트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지?
- B 위원: 메인 사이트 URL만 접속이 가능하다면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2222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 B 위원: 동의함.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D 위원: 같은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222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2230호~2226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오토데스크사의 'AutoCAD', '3DS MAX', 'Electrical', 어도비사의 'illustrator', 'Photoshop', 'Acrobat DC', 'After Effects', 'Premiere Pro', 'Master Collection', 'Lightroom' 구글사의 'SketchUp pro',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로버트 맥닐 앤드 어소시어츠사의 'Rhino', 코렐사의 'CorelDRAW Graphics Suite', MAGIX사의 'Vegas Pro',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ffice' 등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총 42건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안전표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2230호~22265호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자동인증, 크랙파일 또는 제품키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들은 대부분 2019년도, 2020년도 버전임. 안전번호 2020-22237호 불법복제물 'Vegas Pro 17'은 17년도에 출시된 것이 아니라 최신 버전을 의미하는 것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AutoCAD, 3DS MAX, Electrical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오토데스크', illustrator, Photoshop, Acrobat DC, After Effects, Premiere Pro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어도비', SketchUp Pro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구글',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한글과컴퓨터', Rhino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로버트 맥닐 앤드 어소시어츠', CorelDRAW Graphics Suite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코렐', Vegas Pro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MAGIX', Office 프로그램

의 권리자인 '마이크로소프트'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22230호~2226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하고 있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자동인증, 크랙파일 또는 제품키를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C 위원: 같은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22230호~2226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2266호~2233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정직한 후보', '용길이네 곱창집', '남산의 부장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공수도', '작은 아씨들', '인비저블맨' 등 최신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안전표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2273호 밴드 회원수는 3명, 안전번호 제2020-22274호 밴드 회원수는 4명, 안전번호 제2020-22290호 밴드 회원수는 6명, 안전번호 제2020-22296호 밴드 회원수는 4명, 안전번호 제2020-22301호 밴드 회원수는 2명임.

(안전번호 제2020-22301호 조사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밴드의 회원수는 2명이지만 해당 밴드는 누구나 검색해 찾을 수 있고, 밴드 소개와 게시글을 볼 수 있음.

(안전번호 제2020-22301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은 현재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해당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없음. 현재 해당 밴드 회원수는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였음. 보호원 직원이 불법복제물 채증을 위해 해당 밴드에 가입하고 이후 탈퇴한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과거 심의에서 밴드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지 여부, 누구나 접근가능한지 여부, 밴드에 게시된 불법복제물 수 등의 기준을 세웠음.
- D 위원: 밴드에서 영화 불법복제물을 1개만 제공하더라도 회원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영화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첨부파일이 현재 다운로드 기간 만료되어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다른 안전의 심의대상 게시물로 불법복제물이 다운로드가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음.

(안전번호 제2020-22275호 조사 자료를 보여주면서)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밴드의 회원수는 4명임.

(안전번호 제2020-22275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현재 해당 밴드 회원수는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였음. 보호원 직원이 불법복제물 채증을 위해 해당 밴드에 가입하고

이후 탈퇴한 것으로 보임. 첨부된 파일의 다운로드 기간이 15일 남아있지만 영화가 다운로드되지 않음. 해당 영화를 다운로드하려면 해당 밴드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과거 밴드 심의에서 영화와 관계없는 동호회인데 회원 유치를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올려 심각성에 대해 논의를 했었음.

- 성원영 전문위원: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 □□□ □□' 등과 같은 심의대상 게시물의 밴드명만으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밴드에 초청장이 있어야 접속할 수 있는 폐쇄적인 성격이 강한 밴드가 있고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서 접속하면 게시물을 볼 수 있는 공개형 밴드도 있음.

금일 심의하는 게시물은 누구나 밴드 검색이 가능하고 게시물을 볼 수 있는 개방형 밴드임.

심의위원회는 밴드 내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밴드 개설 목적, 가입의 용이성 내지 폐쇄성, 회원 수의 많고 적음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심의하였음.

심의위원회는 밴드에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경우라면 해당 밴드의 특성을 종전과 같이 엄격하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위와 같이 결정한 이후에 보호원에서는 밴드 검색창에 영화를 검색해서 확인되면 모니터링하고 있음.

심의대상 안전의 영화제목을 보면 정직한 후보, 남산의 부장들, 공수도 등 2019년, 2020년에 상영된 최신영화임.

(안전번호 제2020-22278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안전번호 제2020-22278호 밴드명은 '☆☆☆☆☆'임.

(안전표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2278호~22283호 밴드명은 모두 '☆☆☆☆☆'임. 안전번호 제2020-22290호~22294호 밴드명은 모두 '▲▲▲ ▲▲▲'임.

(안전번호 제2020-22290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20-22290호 밴드 회원수는 6명이고, 밴드명은 '▲▲▲ ▲▲▲'임. 해당 밴드에는 다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이 게시되어 있음.

- C 위원: 해당 밴드에는 영화가 1개만 올라가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여러 편의 영화가 올라가 있고 안전번호 제2020-22290호~22291호 모두 같은 밴드의 심의대상 게시물임.

(안전번호 제2020-22295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20-22295호 밴드 회원수는 7명이고, 밴드명은 '보성찬목화'임. 밴드명만 봐서는 친목도모를 위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됨.

해당 밴드에도 다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이 게시되어 있음. 해당 밴드의 심의대상 안전은 1개이지만 밴드 내에 많은 영화 불법복제물이 게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됨.

- D 위원: 안전번호 제2020-22273호 밴드에 다른 영화도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해당 밴드에 접속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0-22273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20-22273호 해당 밴드에서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 최신 영화 '익스트랙션' 등을 제공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2266

호~22334호 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는 밴드는 누구나 밴드명을 검색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게시물을 볼 수 있어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어 보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22266호~22334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동일한 복제·전송자가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밴드명만으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최근 개봉한 영화를 제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D 위원: 같은 의견임.
- A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22266호~2233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2335호~23750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게임 '블랙 메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2375호

는 2020. 3. 6. 출시된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1,36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게임물의 정품 판매가는 약 20,500원이고, 배급사는 'Crowbar Collective'임.

(만화 '사랑을 사랑하는 유카리짱 (출판 : 대원씨아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2546호는 웹하드에서 해당 어문저작물의 압축 파일을 3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jpg 파일로 이용 가능함. 해당 어문저작물은 2020. 3. 21. 출간되었고, 총 3권으로 미완결임. 합법저작물 단권 판매가는 약 3,000원임.

(음악 'Psycho (가수: Red Velvet (레드벨벳))'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2699호의 음원파일은 2019. 12. 23. 발매된 곡으로 앨범 "The ReVe Festival' Finale'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2020년 05월 03일 멜론 (Melon) 실시간 TOP 100'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약 94곡을 이용할 수 있음.

(영화 '사냥의 시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2759호는 '넷플릭스'에서 2020. 4. 23. 공개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87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음악 'ON (가수: 방탄소년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2830호의 음원파일은 2020. 2. 21. 발매된 곡으로 앨범 'MAP OF THE SOUL : 7'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저작물의 실연자인 'RM, 슈가, 제이홉'과 그 외 7인이 작사, 작곡을 하였음. 웹하드에서 '[멜론] 2020년 05월 02일 오후 12시 기준 TOP 100'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약 98곡을 이용할 수 있음.

(방송 '네코파라'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2856호는 블로그에서 '네코파라 3화'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약 24분 분량이며,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방송물은 일본 AT-X 채널에서 2020. 1. 9.부터 2020. 3. 26.까지 방영한 총 12부작 일본 TV만화임.

(영화 '마이 스파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2927호는 2020. 4. 29.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41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5. 12. 현재 상영 중임. 웹하드에서 srt, smi 자막파일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2941호는 웹하드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1화'를 99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물은 tvN 채널에서 2020. 3. 12.부터 목요일 오후 9시에 방영 중인 총 12부작 드라마임.

(음악 '뽕수로 하겠습니다 (가수: 뽕수)'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유튜브에 게시된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20-23129호의 음원파일은 2020. 4. 21. 발매된 곡으로 앨범 '빌보드 프로젝트 Vol.1'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2020.04.21] 뽕수&타이거jk&비지&비비 - 뽕수로 하겠습니다.'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해당 1곡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음원의 실연자 외 3인이 작사를 하였음.

(음악 'HIP (가수: 마마무 (Mamamoo))'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3420호의 음원파일은 2019. 11. 14. 발매된 곡으로 앨범 'reality in BLACK'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2019년 11월 14일 신곡'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약 12곡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음원의 실연자인 '화사' 외 2인이 작사를 하였음. 해당 압축 파일은 127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만화 '빨강머리 백설공주 (출판 : 서울문화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3750호는 웹하드에서 '빨강머리 백설공주 1~101화' 압축 파일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jpg 파일로 이용 가능함. 해당 어문저작물의 1권은 2016. 7. 11. 출간되었고, 총 20권으로 미완결임. 합법저작물 단권 판매가는 약 2,250원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22335호~2375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모두 불법복제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보임.
- B 위원: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동의함.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해야할 것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2335호~23750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2228~2375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8쪽부터 2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26266호~27792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7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7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5. 20.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